



즉시 배포용: 2021년 11월 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소비자 보호 입법 패키지에 서명**

**법dks S.153/A.2382, 남용되는 채무 추심 관행을 다루는 소비자 신용 공정성 법 제정**

**법안 S.4823/A.3359, 유틸리티 회사가 거주 고객 불만과 관련된 고객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

**법안 S.1199/A.5838,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유틸리티 회사 소비자 옹호 경험이 있는 개인을 최소 한 명 이상 두도록 요구**

Hochul 주지사는 오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 S.153/A.2382는 많은 관행이 오래된 부채에 대한 소송, 신용 카드 발행자의 부채가 다른 채권자에게 재판매, 부채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부채 징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신용 공정성 법을 제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주 민사소송법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임금 체불 및 은행 계좌 동결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부담스러운 채권 추심 관행에 따라 행동할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법안 S.4823/A.3359는 불만 사항 또는 미지급 잔액 협상 시 유틸리티 회사의 괴롭힘을 금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안 S.1199/A.5838은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소비자 옹호 전문가인 위원을 최소 한 명 이상 둘 것을 요구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행위자들이 소비자들을 이용하려 할 때, 뉴욕은 이에 대해 반격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 시민들을 채무 추심자들과 유틸리티 회사들의 비양심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가지 새로운 법안은 뉴욕을 모든 소비자들에게 더 좋고 공정한 곳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금융 감독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감독 대행인 Adrienne A.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PLR로의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 계속됨에 따라 뉴욕 시민들을 비양심적인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본 법안(S.153/A.2382)은 알려진 악탈적 채권 추심 관행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악탈적 채권 추심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문서조차 없는 시한부 소비자 부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남용 전술을 금지합니다. 이 새로운 법은 가장 취약한 뉴욕 시민들을 위해 중요한 소비자 보호를 확대합니다."

소비자 신용 공정법은 피고에게 채권자의 법적 조치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고, 법원 제출에 소송 대상 채무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소비자 신용 거래에 대한 공소시효를 낮추고, 소비자 신용에 대한 채무 불이행 판결 신청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설정하여 남용되는 채무 추심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법적 조치 과정에서 소비자가 받는 정보를 늘림으로써 주 민사소송법의 격차가 줄어들고, 임금체불, 은행계좌 동결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막아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운 채무추심 관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뉴욕 시민들에 대한 부채 스트레스를 완화하려는 Hochul 주지사의 이전 노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공공요금 고객 체납액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격 저소득 가구의 체납액을 최대 1만 달러까지 제공함으로써 주택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부서(Department of Public Service)는 고객이 사용 가능한 지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유틸리티 회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유틸리티 회사는 합법적인 채무 추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Kevin Thoma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혹적이고 착취적인 채무 추심 소송이 뉴욕 주 전역에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코로나19의 결과로 인해 뉴욕 시민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종종 노인, 장애인,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계층의 뉴욕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소송의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소비자 신용 공정법은 이러한 남용되고 종종 불법적인 채무 추심 관행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Weinstein 하원의원과 열심히 일하는 소비자 지지자들 그리고 CCFA를 법제화함으로써 뉴욕 소비자들을 옹호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Helene E. Weinste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은 남용되는 채무 추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모든 채무 추심 소송이 이러한 엄격한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오래 전에 법을 개정했어야 합니다. 저는 법률에 절실히 필요한 이러한 개혁을 제정하기 위해 협력해 주신 Hochul 주지사와 Thomas 상원의원님, 그리고 수년 동안 그 과정을 지켜온 모든 소비자 옹호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법안 S.4823/A.3359는 유틸리티 회사가 거주 고객과 일할 때 괴롭힘, 억압 또는 학대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유틸리티 고객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요금 지불 누락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중단 방지와 같은 유틸리티에 대한 대가로 고객에게 거액의 계약금을 지불하도록 권장하는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틸리티 회사가 행하는 여러 가지 비양심적 관행에 대한 대응입니다.

**Leroy Comri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가 팬데믹으로부터 계속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상원 다수당 회의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 법안 패키지가 바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 법안은 가정 에너지 공정 관리법(HEFA)에 대한 명백한 조항을 제공하여, 뉴욕 시민들이 지불 방식을 협상하거나 에너지 공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괴롭힘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저는 이 법안에 서명하고 주거용 유틸리티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시 사업자와 ESCO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중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령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해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my Paul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객은 공공 요금을 제 때에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 회사의 대리인은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처우해야 합니다. 고객은 욕설이나 기만적인 지불 관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유틸리티 회사가 고객의 부채를 추심하고 최고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공요금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뉴욕 시민들의 공정한 처우를 돕기 위해 이 핵심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안 **S.1199/A.5838**은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유틸리티 회사 소비자 옹호 경험이 있는 개인을 최소 한 명 이상 두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원래 목표를 향해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해 본 경험이 있는 커미셔너는 유틸리티 고객에게 적합한 것에 초점을 맞춘 관점을 제공하여 위원회의 이익이 상업적 이익이나 공익적 이익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Michael Gianaris**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너무 자주 대중이 아닌 규제하는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SC**의 소비자 담당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제안이 **Hochul**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주는 이제 **PSC**에 소비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Catalina Cru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가정 난방비와 전기료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공공요금 상승이 고정 수입에 시달리는 수백만 명의 뉴욕 시민들과 저임금 일자리와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소비자들은 유틸리티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 기관을 필요로 합니다. 이 법은 공공요금 납부자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 법안을 법으로 제정해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내며 이는 혹독한 겨울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제 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법안 **S.153/A.2382**의 일부는 즉시 발효되며 법안 **S.4823/A.3359** 및 법안 **S.1199/A.5838**은 법제화된 지 30일 후에 발효됩니다.

###